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7가합58920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피고1. B 주식회사

2. C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변론 종결2020. 5. 21.

판결 선고2020. 6.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752,2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공제조합은 2018. 1. 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6. 23.부터 각 2020.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9,669,69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공제조합은 2018. 1. 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6. 23.부터 각 2019.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시공 등

-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원고에게 경산시 E아파트 6개동 4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08. 3.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수회에 걸쳐 하도급대금,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다가 2010. 2. 23. 최종 하도급대금을 8,129,080,738원(부가가치세 438,080,738원 포함)으로 정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 3)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된 부분이 있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2.경 원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948,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선행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표의 '선행사건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합계 570,523,802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6. 10. 25. 피고들에 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고지서가 2016. 10. 28. 피고 C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피고 B에 대하여는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 등 다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선행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7. 8. 11.,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84,563,835원{=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받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417,360,292원 × 부가가치세 공제비율 10/11 × 책임제한비율 75%}, ②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525,853,775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852,118,222원 × 채권양도비율 90.51% × 부가가치세 공제비율 10/11 × 책임제한비율 75%} 등 전체 하자보수비를 810,417,610원(284,563,835원 + 525,853,775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C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친 후 2010. 3. 11.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06,454,037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자보수책임기간 : 2010. 3. 10.부터 2020. 2. 29.까지
- 보증기간 : 2010. 3. 1.부터 2020. 2. 29.까지

- 보증약관 -

- 제1조

① 피고 공제조합은 앞면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채무자,

피고 B)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피고 B)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공제조합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 합계 약 570,523,801원 중 피고 B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379,669,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②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위 379,669,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제조합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자는 원고가 제공한 자재(레미콘 등)로 인한 것이거나, 층간균열을 비롯한 각종 균열, 누수로 인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의 책임이 잘못 또는 과다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하자보수비의 확대에 원고가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 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책임 발생 여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실시한 증거(특히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120개월(10년)'으로 정한 사실, 피고 B은 2010. 2. 23.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 늦어도 선행소송의 감정절차가 진행된 2015. 12.경에는 피고 B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안전과 기능·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로 인한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발생 여부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사고'란 "피고 B이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B에게 보수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각 '2010.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2, 4, 8,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또는 구분소유자)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여러 하자로 인해 2010. 10.경부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더 이상의 하자보수를 기대하지 어려워진 2015. 2.경 원고 등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늦어도 선행소송의 감정절차가 진행된 2015. 12.경에는 피고 B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③ 피고 B은 그 무렵인 2015. 12. 18. 폐업한 사실, ④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2016. 10. 25. 피고들에게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피고 B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공제조합에게는 보증금청구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 공제조합에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사실, 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 층간균열 등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선행소송 결과 2017. 8. 11. 피고 B의 시공상 하자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선행판결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인 2017. 12.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적어도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18. 6. 12.에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보수비

앞서 실시하였거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 2019. 11. 22.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 합계는 570,523,802원이고, 그 중 피고 B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379,669,6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공제조합의 개별하자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공제조합은 위 하자보수비 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자재로 인한 하자 또는 원고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이거나, 개별하자별로 피고 B의 책임이 대폭 제한 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정인 F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실시한 증거와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항목별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하자보수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자재 등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주요 자재를 제공받고 또한 시공관리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 부분은 피고 B의 책임이 아니다.	[배척]피고 공제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자재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거나,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해 직접적인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와 같이 사정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참작하는 사유로 반영한다).
층간균열 등	(1)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대해 피고 B의 책임을 100% 인정하였다.(2) 층간균열은 각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간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원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한 데 반해, 단지 철근콘크리트 타설 작업만을 한 피고 B의 책임은 이 부분 전체 하자의 50%를 넘지 않는다.	[배척]① 층간 이음은 현재의 시공기법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음부에 발생된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일부 치핑을 통하여 접착력을 증가시키며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 다짐을 통하여 콘크리트 내부가 밀실 상태가 되도록 하면 이를 줄일 수 있는 점, ② 피고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C업체였던 점 등 참작.
지하각실 슬라브, 보 균열 및 누수, 내력벽체 균열(0.3mm 이상)	(1)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대해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인정하였다.(2) 원고 지급자재의 특성 및 원고의 관리감독감리상 잘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의 책임이 30%를 넘지 않는다.(3) 누수는 방수 시공을 하지 않은 설계상 문제로 피고 B의 책임이 없다.	[배척]① 감정인 F은 원고의 관리 부주의에 비중이 높은 부분과, 피고 B의 공사상 책임 범위에 비중이 높은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하였고, 이 부분의 경우 거푸집시공불량, 콘크리트 타설시 다지기 불량, 탈형 및 양생불량 등 피고 B의 공사상 책임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 B의 공사 범위와 무관한 세대 발코니 비내력 벽체에 발생한 균열 등은 모두 배제한 점[별지 표 코드 중 (2.5.1.2-1), (2.5.1.2-2), (2.7.1.4-4)], ③ 비교적 큰 균열로 인해 빗물이 침투하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지하각실 슬라브, 보 균열 및 누수, 내력벽체 균열(0.3mm 또는 0.4mm 미만)	(1)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대해 피고 B의 책임을 30%(일부 50%)로 인정하였다.(2) 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균열로서 피고 B의 책임이 없다.	[배척]① 균열폭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②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 등의 요인으로 균열이 더 진행되어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	(1)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대해 피고 B의 책임을 80% 또는 60%로 인정하였다.(2) 철근이 없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건조수축시 자유롭게 수축하고 신축줄눈을 설치하여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줄눈설치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책임은 없다.	[배척]① 1mm 이상의 대형균열의 경우와 구분되는 점, ② 감정인은 2020. 4. 22.자 감정보완 회보서에서 차량통행 등 입주민 등의 이용에 따른 책임을 원고 과실로 보아 지하주차장 바닥 등에 발생한 무근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피고 B의 책임을 60%에서 30%로 축소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뒤에서 보는 '책임의 제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 공제조합의 개별하자 등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총괄하였고, 피고 B이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도 주요 자재를 직접 공급한 점,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고, 이를 통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한편 피고 공제조합은 선행소송에서 반영된 '채권양도비율(90.51%)'도 피고 B의 손해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중 일부의 권리만을 양수하여 행사한 선행소송과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원고는 '구상금'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않다)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할 이유가 없다].

라.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84,752,270원(379,669,694원 × 75%, 원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 있는 위 284,752,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752,2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6. 23.부터 각 피고 공제조합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권철

판사정윤택

판사전희숙

별지